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8. 20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8.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99.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가. 제안이유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보호 및 소비자단체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합리적인 법적 규정과 행정규범의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안 제3조)
 -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규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안 제12조)
 - 시장은 재정경제부 및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안 제18조)
 -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정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 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27조)
 -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장)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됨.

- 위원회의 당연직은 환경·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 위촉은 시의회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위원회의 기능(안 제30조)

-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자문
-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조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부천시에서 재경부에 등록된 소비자보호단체는 몇 개입니까?	○ YMCA, YWCA, 한국부인회 등입니다.
○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 풀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 동일하게 자급됩니까, 차등지급됩니까?	○ 사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국·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 지구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 예산만 보조됩니다.
○ 관변 단체화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소비자를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소비자단체에 주는 풀보조금을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반대토론

- 현재 소비자보호단체 및 시에서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데 유급상담원을 새로 두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 제11조를 삭제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요지

-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삭제하면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95호
의결년월일	99. 8. 27 (제72회)

제출년월일 : 1999. 8. 26

제출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중 제11조의 소비자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하여 소비자 고발 및 민원접수 건수가 극히 미비하고 해당 부서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소비자상담실에 유급상담원을 두어 급료를 지급하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주요골자

- 안 제11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안 제11조 1, 2, 3항 삭제)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③생략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②생략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3조(위해 물품의 제공방지) ①~②생략	제12조(위해 물품의 제공방지)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제14조(상품의 표시) 생략	제13조(상품의 표시) (제정안과 같음)
제15조(거래 조건의 명시와 설명) 생략	제14조(거래 조건의 명시와 설명) (제정안과 같음)
제16조(계량의 적정화) ①~②생략	제15조(계량의 적정화)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17조(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생략	제16조(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제정안과 같음)
제5장 소비자 피해구제	
제18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② 생략	제17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② (제정안과 같음)
제19조(자료의 검사 제출요구) ①~②생략	제18조(자료의 검사 제출요구)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20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생략	제19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정안과 같음)
제21조(소비자 피해 처리기한) 생략	제20조(소비자 피해 처리기한) (제정안과 같음)
제22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생략	제21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정안과 같음)
제23조(소비자 피해조정) ①~②생략	제22조(소비자 피해조정)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24조(사업자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 ①~②생략	제23조(사업자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25조(의견 진술의 기회부여) 생략	제24조(의견 진술의 기회부여) (제정안과 같음)
제26조(권고 및 공표) ①~②생략	제25조(권고 및 공표) ①~② (제정안과 같음)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7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생략	제2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정안과 같음)
제28조(위원회 구성) ①~⑤생략	제27조(위원회 구성) ①~⑤(제정안과 같음)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③생략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③(제정안과 같음)
제30조(위원회의 기능) ①~②생략	제29조(위원회의 기능)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31조(회의) ①~④생략	제30조(회의) ①~④(제정안과 같음)
제32조(실무위원회) ①~⑥생략	제31조(실무위원회) ①~⑥(제정안과 같음)
제33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생략	제32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제정안과 같음)
제34조(설비보상) 생략	제33조(설비보상)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제3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생략	제3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정안과 같음)
제36조(준용) 생략	제35조(준용) (제정안과 같음)
제37조(시행규칙) 생략	제36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1조(시행일) (제정안과 같음)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2조(폐지조례) (제정안과 같음)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경과조치)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포함]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자재(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재정경제부 또는 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작활동의 지원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2장 소비자의 권리보호

제6조(위해방지) ①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보호 교육 등)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육성지원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의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시장은 재정경제부 및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2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연월일,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계량·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17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소비자피해 조정) ①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상황,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23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18조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23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권고 및 공표) ①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3조제1항의 조사 결과를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5항 규정에 의거 시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2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掌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시책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의 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응한 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6조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불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